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10월 24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광화문)

여성영화인모임,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5개소), 한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평화의샘,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순서 •

■ 사회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판결의 의미와 과제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 연대 발언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

정다솔 찍는페미 공동대표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소장

■ 피해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영화촬영장에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에 대하여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1. 1심 판결의 경우

-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 설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1심 판결의 경우 감독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 양 판단하였음.

2. 2심 판결의 경우

-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함.
- 영화촬영장에서의 성추행에 대하여
“감독의 일방적인 연기지시나 이에 따른 피고인의 연기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전에 공유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이상, 그것을 단지 정당한 연기였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하였음.
- 또한 계획적, 의도적 행위가 아니었다거나 감독의 연기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여 추행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음.
- 또한 무고죄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부분은(강제추행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무고)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하였음.

※ 2심 판결의 경우 감독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라는 것

은 없고 또한 이 사건 씬의 촬영은 얼굴 위주라고 말하고 있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감독의 연기 지시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거나 정당한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

※ 1심 판결의 경우, 촬영 스텝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록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진술내용으로 인정하였으나 2심 판결은 전체적인 내용을 반영해줌.

3. 판결의 의미

-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이상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도362호 판결)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판결문임.
- 영화촬영장에서의 연기 등으로 인한 추행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판결임. 감독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기내용에 대해서 피해자와 공유가 되지 않는 이상 '연기에 충실한 것일 뿐이다'라는 말로는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임.
- 또한 연기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는 것임. 영화촬영장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세워주고 있음.
- 다만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무고의 죄책까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부분은 아쉬움.

우리는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만들고 있는 백재호입니다. 저는 피해자와 연대하고 있는 영화 단체들 중 하나인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운영위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저와 연대 단체의 영화인들은 모 영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메이킹영상 모음과 실제 촬영영상 등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본 영화는 15세 관람가의 멜로/로맨스 영화입니다. 피해자가 맡은 역할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입니다. 시나리오와 콘티, 그리고 실제로 개봉한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사건이 일어난 13번 씬에서 중요하게 표현되는 부분은 성적인 노출이 아니라,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인물의 모습입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촬영콘티에는 상반신, 인물의 얼굴 위주로 촬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촬영방식은 컷이 따로 나뉘지 않는, 촬영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배우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찍는 핸드헬드 롱테이크입니다. 미리 예정되어 있던 대로 연기를 하지 않는다면, NG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명분장 역시 어깨와 등 윗부분에만 했습니다. 여벌의 의상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노출이나 접촉이 예정되어 있다면 필수적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공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촬영하는 도중에 의상이 찢어진다면, 그리고 NG가 난다면, 촬영을 진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메이킹 영상 속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상황이 담겨있습니다. 메이킹 영상은 현장 전체가 아니라, 메이킹 기사가 선택해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감독과 스태프들이 메이킹 영상 밖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황보다는 현장상황이 어땠는지 알기 위해 참고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13번 씬을 촬영할 때 메이킹 기사가 촬영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출이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메이킹을 찍지 않습니다. 하지만, 13번 씬의 촬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에도 메이킹 기사가 촬영감독 뒤에서 메이킹을 찍고 있었습니다. 메이킹과 촬영영상에 따르면, 촬영 전 리허설을 제외하고, 총 세 번의 본 촬영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NG 후, 세 번째 촬영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앞 선 두 번의 촬영과 세 번째 촬영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가해자가 제출한 영상들을 받아 분석하고, 재판부에 메이킹 영상과 실제 촬영영상이 가해자의 무죄의 근거로 쓰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반신, 얼굴 위주의 촬영이라 하반신이 직접 찍히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벽을 바라보고 서있고 가해자가 등 뒤에 있는 상황에서 접촉이 없었다면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피해자의 움직임과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팔을 내려 하반신을 방어하는 것을 보아, 아무런 접촉이 없었거나 어쩔 수 없이 스치기만 했다는 가해자 측 주장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촬영영상에 담겨져 있는 합의되지 않은 가해자의 폭력이나 피해자의 상체를 노출 시킨 행위만으로도 범죄입니다. 상호 합의 되지 않은 행위가 연기라는 명목의 업무상 행위로 판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술이라는 미명 아래, 현실의 범죄가 연기니까, 영화니까 라며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대책위에 참여하고, 피해자와

연대하고 있는 영화인들을 포함해 영화계 전체가 스스로 반성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배우와 스태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촬영 현장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관객들이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건과 이 사건의 판결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수많은 영화계 내 성폭력, 위계폭력들, 잘못된 관행들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피해자가 어렵게 낸 용기와 노력이 선정적인 가십으로 소모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결코 피해자의 몫이 아니다”

정다솔 짝스페미 공동대표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주변 영화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 라는 말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사실이 명확함에도 1심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와 도리어 영화인들의 더 큰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마땅히 유죄판결이 나온 것이 당연하고, 또한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최근에는 언론을 통해 연쇄적으로 예술계, 영화계의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많은 이들이 피해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자행하는 악의적인 2차 가해 때문입니다. 이 문제점은 재판의 2심 판결문에 자세히 명시되어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했다며 무고하였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전문은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입니다.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기사들은 재판에 불복함과 동시에 2심 판결문에 명시된 사항들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이는 정중한 사과를 기다리는 대중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판결문과 같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이므로 지금이라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과거 이 사건을 앞으로 영화계를 바꿀 유일무이한 사건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에 영화계가 힘을 실어주고, 또 대중들이 그 문제를 인식하는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은 개인과 개인의 법정 공방이 아니며, 앞으로 이 영화계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에 2심 재판의 판결은 영화계 내 성폭력 문제에 경종을 울릴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영화계의 성폭력 문제는 마땅히 개인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영화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유죄가 나왔음에도 피해자분의 옆자리에 앉아 “재판에 유죄가 나와 축하드린다.” 이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몇 개월 동안 곁에서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기에 유죄가 나왔음에도 마지막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화계 내 성폭력 문제는 제도와 영화계 노동 환경이 바뀌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당했는지에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만들게 됩니다. 그 지점보다 제도와 환경개선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이 어려운 싸움을 지속해나가는 이유는 개인의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한 명의 영화인으로서 자신과 같은 사례가 더는 없기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재판의 유죄 판결은 영화계의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경험들을 신고하지 못하고 기사와 방송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지망생 혹은 현역 배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더욱이 잘 해결되어야 할 것 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제도적 환경개선의 노력이 뒤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 많은 피해자분들에게 모든 상황은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지고 가야할 길이 아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을 위해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온 사건 피해자분에게 큰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연대 발언 3]

영화현장에서의 스텝과 배우의 거리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대책위로 참여하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스텝들은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하여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닿은 스텝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였고 가해자의 억울한 측면을 주요하게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장면을 촬영 할 때 촬영현장에 있었던 스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은 일어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추행을 하나”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영화”를 찍는 일은 사실을 가장 하는 일임을 전제하여 사실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상, 사실이 일어나도 가장한 것으로 오인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는 스텝의 1심 법정 진술에서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또한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이상 실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며 그리고 연기 중에 벌어지는 배우 간의 구체적인 일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배우의 몸을 만지며 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 보여지면 이미 서로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촬영현장을 함께 하고 있음에도 배우의 일을 모르고 있으며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또한 스텝들의 촬영준비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배우가 현장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듯 현장의 스텝들에게 배우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때문에 혹여 배우에 의해 촬영이 지연되는 것이 감지가 되면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이해되고 급기야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이야기해도 가해자로 하여금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러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영화를 찍는 일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느낌, 감정을 말하는 것만으로 감독의 연기지시가 제대로 전달되거나 상대배우의 이해를 얻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의 항소심 판결은 연기 중이더라도 상대배우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연기를 빌미로 한 범죄 행위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호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는 결국 구체성을 통해 얻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영화를 만드는 모든 현장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의 목소리가 들리면 영화라는 오해를 벗고 일단 잘 들어봐 주길 바랍니다. 영화계 내 성폭력이 사라지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대 발언 4]

성폭력은 성폭력이다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2017년 10월 13일 2년 6개월의 사투가 끝났습니다.

영화계에서 성폭력, 폭언, 성상납 등이 오랜 기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고리를 끊는 유의미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적 편견과 맞서 고군분투 해준 피해자분의 용기 결과입니다. 다시 한 번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보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영화와 같이 신체의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 과정이라 하더라도 연기를 하는 행위와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고, 연기나 촬영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적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판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을 하는 이 자리가 왠지 씁쓸합니다. 공대위는 피해자를 1심 판결 후에 만났습니다. 우리사회가 성폭력피해자에게 보이는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들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서입니다.

성폭력이 범죄임은 우리사회 구성원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지만 피해자들은 시민, 사법부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싸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건 속으로 들어가면 성폭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성폭력피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업무상(연기상 배역에 몰입하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억울한 마음에 다소 과장해서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시각을 돌리기 위해 피해자와 공대위는 영화계의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고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피해자 1인이 나서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판부와 검찰이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수사하여 판단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의 유의미한 판단에도 양형의 판단에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연기자로서 감독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순간적·우발적으로 흥분하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계획적·의도적으로...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상 감형의 이유를 판시하였는데 가해자가 가진 왜곡된 성적 규범이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들의 무시의 태도를 우발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의 하나이며 지금껏 성폭력이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주요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오랜 경력의 연기 전문가입니다. 순간적·우발적 흥분 상태가 되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제어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전문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본 사유는 양형상 감형의 요소에서 배제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본 사건은 앞으로 연기를 시작하는 그리고 배우 활동 중에 있지만 부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연기생활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하에 참아왔던 많은 분들에게 용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에서 더 많은 분들이 용기 낼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연대 발언 5]

가해자의 인성은 관심 없다, 언론은 더 이상 소설을 쓰지 말라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지난 13일 남배우A 사건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직후부터 지금까지 가해자는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놓고 억울하다는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쓰면서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1심의 관련 기사는 채 30건도 되지 않지만 현재 포털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사가 500건이 훌쩍 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릴 때는 언론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가해자가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무죄를 주장하는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내용 또한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영화이름, 피해자의 극중 이름을 여과 없이 인터뷰를 했다고 해도 언론은 성폭력보도준칙에 따라 피해자를 특정 할 수 없도록 여과해서 보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를 아무 고민 없이 보도하여 피해자의 신상이 드러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인성이 좋다, 가해자는 성가대 활동을 했다, 가해자는 욕도 못한다 등등 성폭력 사건과 관계없는 가해자의 인성을 운운하면서 그의 무죄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인권위에서 제정한 성폭력보도준칙에는 피해 사실을 자세하게 보도하지 말 것을 언론에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심지어 한 방송사는 여성의 상의가 찢겨져 검정 브래지어가 드러나는 장면을 일러스트로 그려서 내보내는 등 선정적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소설 같은 보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제 가해자의 거짓된 입장만을 대변하는 보도는 멈춰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영화 현장에서, 연예 현장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근절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또한 영화계, 나아가 연예계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성폭력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기자회견문]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영화를 만드는 상식은 삶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2016년 12월 2일 본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마음에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를 “배역에 몰입해 연기”한 것이고 이는 “업무상 행위”임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불합리 하거나 모순된 점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2017년 10월 13일 원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무고로 징역1년(집행유예2년,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등록)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화촬영 과정에서의 성폭력 사안에 대한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의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연기행위를 벗어나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도 없이 연기를 빌미로 피해자의 상체와 하체를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 영화와 같이 신체의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연기를 하는 행위와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감독의 지시로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의 승낙이 없었던 부분은 연기로 볼 수 없다”며 배역에 몰입한 연기가 아니라 “연기를 빌미로 한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사전 합의 속에서 영화 촬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며, 합의되지 않은 연기는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피해자를 무고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형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는 보복성 역고소 행위에 대한 일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부의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판결 직후 “세상이 무섭다”, “단체 시위로 무죄에서 유죄”, “억울하다”며 여전히 자신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는

영화 속 피해자 배역 이름을 거론하며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등 2차 피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언론 또한 이런 가해자의 주장을 거르지 않고,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보내며 2차 피해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영화가 만들어진지 100년이 다되도록 영화는 과정의 온당함 보다 만들어진 결과를 중시해 왔습니다. 천만관객 혹은 해외 유명영화제의 수상에 초점을 맞춰 “재밌는 영화”, “좋은 영화”만 대중의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흥행”과 “작품성”에 치중하여 함께 영화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사실적인 연기를 유도한다는 미명 하에 상대 여자배우 모르게 남자배우에게만 연출지도를 하고 그럴듯한 화면을 위해 실제 위험으로 내모는 일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남배우A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계기가 되어 영화를 위해선 뭐든 용인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온 폭력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영화”는 “좋은 현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영화를 만드는 상식 또한 삶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향후에도 남배우A사건 공동대책위 참여 단체들은 남배우A사건에 그치지 않고 영화계 내 성폭력 사건이 사라지고 성평등한 현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17. 10. 24.

여성영화인모임,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5개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평화의샘,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